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전종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544

발의연월일: 2024. 11. 14.

발 의 자:전종덕·정혜경·박홍배

이수진 • 추미애 • 주철현

송재봉 • 윤종오 • 정을호

김 윤 · 임광현 · 오세희

송옥주 · 문대림 · 서삼석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촌의 균형 있는 개발·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, 기본계획에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자급목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.

한편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자원의 감소 및 대량폐사 현상이 수산업 발전에 커다란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므 로 기본계획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기후변화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지 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7조제2항제4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수산업 · 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수산업 · 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) 제7조제2항의
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7조(수산업・어촌 발전 기본계	제7조(수산업・어촌 발전 기본계		
획 등의 수립) ① (생 략)	획 등의 수립) ① (현행과 같		
	승)		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	②		
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		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		
<u> <신 설></u>	4.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		
	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		
	<u>방안에 관한 사항</u>		
<u>4.</u> ~ <u>7.</u> (생 략)	<u>5.</u> ~ <u>8.</u> (현행 제4호부터 제7		
	호까지와 같음)		
③ ~ ⑨ (생 략)	③ ~ ⑨ (현행과 같음)		